



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안내



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



감귤의무자조금이란?

감귤 농업인과 유통조직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조성금과 정부 지원금 (최대 1:1 매칭)으로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급안정, 홍보, 소비촉진, 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는 자금입니다.

(근거법령 :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)

감귤의무자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?

2024년 감귤의무자조금 사업내역

수급안정사업



· 이상기후재해 재배농가 약제 지원
(7,942농가)

소비촉진홍보



· 온라인 : 유튜브, SNS 홍보
: 콘텐츠 업로드 및 이벤트
(MZ세대 대상 감귤수요 창출)
· 감귤데이 성수동 팝업스토어 운영
(과일산업대전, 봉은사 등 홍보)

유통 활성화



·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·
대의원 소비지현장 조사 및
소비트렌드 파악 등

감귤산업 경쟁력 강화

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



· 고품질 감귤생산 교육 : 29회 2,324명
· 정보제공 : 6회 발간

감귤 조사 연구

· 2024년산 노지감귤 운송원가 조사
· 2023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
· 지속 가능한 미래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

감귤 농가 개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
수급안정사업, 소비촉진홍보, 유통 활성화, 교육, 조사연구 등
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대응 사업에 쓰여집니다.

감귤의무자조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?



자조금 가입



자조금 납부

☑ 농업인 : 출하금액 x 0.25%

☑ 유통조직 : 전년도 매출액 x 0.05%

가입 방법 •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 작성 제출(최초 1번)

제출서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또는 가까운 농·감협

양식 감귤연합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자료실에 등재 또는 가까운 농·감협에 비치

🌐 감귤연합회 홈페이지 <http://jejugamgyul.or.kr>

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**제주감귤연합회** 검색



납부 방법 • 농·감협 계통출하 농업인 : 대금정산 시 공제(자동납부) • 비계통출하 농업인(택배, 상인거래 등) : 아래 절차로 납부



☑ 감귤출하실적확인서 양식 : 감귤연합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자료실에 등재 또는 농·감협 비치

☑ 증빙자료 : 택배 거래내역, 통장 거래내역, 매매계약서, 입금확인증 등 감귤 출하실적 확인 자료

• 유통조직(농협, 영농법인, 상인단체 등) : 아래절차로 납부



☑ 기초자료 양식 : 감귤연합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자료실에 등재 또는 사무국에서 송부

☑ 증빙자료 : 출하물량 및 출하금액 산출명세서(법인세 신고 시 제출자료 등)



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

“

**여러분의 참여가
감귤산업의 미래에
큰 힘이 됩니다~**



의무자조금 미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]

(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, 유통,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

감귤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: 사무국 (064-720-1136, 1134, 1132)